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9-30호
2019. 4. 29.(월)

차 례

입법예고(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9-397호)1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401호)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402호)18

공 람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용어가 포함된 조문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변경된 제도 시행에 따라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예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안 제5조제2항).

- “장애등급” 을 “장애의 정도” 로 조문 개정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덕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총무과(전화:042-608-6502, FAX:042-608-382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총무과 담당자 최은호(☎ 042-608-6502)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용어가 포함된 조문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변경된 제도 시행에 따라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예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안 제5 조제2항).
 -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로 조문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 4)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 5) 입법예고: 2019. 00. 00. ~ 00. 00. / 20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 (지원신청 등)</p> <p>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u>장애등급</u>,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제5조 (지원신청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장애의 정도</u>, ----- -----.</p>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019. 7. 1. 개정 · 시행 예정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총 무 과	
담 당 자	최 은 호
연 락 처	(042) 608 - 6502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 9. 18.)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사항(2018. 9. 18.)을 반영하여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등급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준용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규제심사: 소관부서 협의
-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 4)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 5) 입법예고: 2019. 4. 29. ~ 2019. 5. 20. / 20일 이상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 5. 1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전화 : 042-608-6042, FAX : 042-608-3811, E-mail : limdj93@korea.kr)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전화 : 042-608-6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장애”란 「<u>공무원연금법 시행령</u>」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② (생략)</p>	<p>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 ----- 「<u>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u>」 제40조에 규정된 경우 ----- -----.</p> <p>②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 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 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②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홍보실	
담 당 자 연 락 처	임 동 직 042-608-6042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제출일)
		20 .0.0.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40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감면 대상자의 범위 조정 및 대형폐기물 항목 추가 등 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공공의 이익 증진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29조의 제목을 변경함(안 제29조).

나. 종량제봉투 감면 대상자 용어 변경 및 범위를 조정함
(안 제29조제1항제4호).

다. 종량제봉투 감면 및 무료제공 대상을 확대함
(안 제29조제1항제6호).

라.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항목을 추가함(안 별표 1).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후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후환경과(전화 : 042-608-6834, FAX:042-608-3834, E-Mail : broxigar@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후환경과 담당자 이태희(전화 : 042-608-38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감면 대상자의 범위 조정 및 대형폐기물 항목 추가 등 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공공의 이익 증진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9조의 제목을 변경함(안 제29조).

나. 종량제봉투 감면 대상자 용어 변경 및 범위를 조정함(안 제29조제1항제4호).

다. 종량제봉투 감면 및 무료제공 대상을 확대함(안 제29조제1항제6호).

라.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항목을 추가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예산 필요

다. 비용추계서: 별첨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4)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5) 입법예고: 2019. 00. 00 ~ 2019. 00. 00 / 20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목 “(종량제봉투의 감면)”을 “(종량제봉투의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1급 장애인 세대”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 잡쓰레기란 다음에 폐소화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폐소화기 (가압식 소화기 제외)	4.6kg 이하	3,000
	4.6kg 초과 20kg 미만	5,000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종량제봉투의 감면)</p> <p>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부자가정 및 <u>1급 장애인 세대</u></p> <p>5. (생략)</p> <p>6. (신설)</p>	<p>제29조(종량제봉투의 감면 등)</p> <p>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장애인복지법</u>」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u>장애인 세대</u></p> <p>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 비용추계서 】

1. 의 안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 종량제봉투 감면 대상자 범위 조정에 따른 봉투 추가 제작
- 관련조문

제29조(종량제봉투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략)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부자가정 및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5. (생략)

3. 비용추계

- 감면자용 종량제봉투(10ℓ) 추가 제작 : 6,200천원

▶ 3,387명(2019년 3월 기준 관내 2~3급 장애인) × 4명(최대 지급 가능한 세대원 수) × 38원(제작단가) × 2장(1인당 10ℓ 2장 지급) × 6개월(7월~12월)

【 관련 법령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합성수지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91-02-00 음식물류 폐기물(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91-03-00 폐식용유(가정 및 음식점에서 분리배출된 것을 말한다)

91-04-00 폐지류(종이팩을 포함한다)

91-05-00 고철 및 금속캔류

91-06-01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

91-06-02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

91-06-03 폐합성고무류

91-07-01 유리병

91-07-02 폐유리

91-08-00 폐의류 및 원단류(섬유재질의 커튼, 현수막 등을 포함한다)

91-09-00 폐전기전자제품

91-10 폐목재 및 폐가구류

91-10-01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91-10-02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는 제외한다)

91-10-03 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

91-11-00 건설폐재류(콘크리트, 벽돌 등을 말한다)

91-12-00 폐타일 및 도자기류

91-13-00 폐형광등

91-14-00 폐전지류

91-15-00 연탄재

91-16-00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

91-17-00 식물성 잔재물

91-18-01 영농폐기물(농약용기류)

91-18-02 영농폐기물(농촌폐비닐)

91-19-00 폐소화기류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

【 참고 자료 】

① 종량제봉투 감면 대상자 지급현황(2019. 3. 기준)

○ 개정 전

지급 범위	지급 인원	단가(10ℓ)	지급액	비고
1급 장애인 세대	3,936명	38원	300천원	

○ 개정 후

지급 범위	지급 인원	단가(10ℓ)	지급액	비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舊 1~3급 장애인)	17,484명 예상	38원	1,329 천원	월 1,029천원 증가

※ 봉투 지급량 : 1인당 매월 20ℓ 지급(세대당 최대 4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 후 환 경 과	
담 당 자 연 락 처	이 태 희 042-608-6834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